PACKAGING MATERIAL & STRUCTURE EVALUATION

포장재 재질 및 구조평가 시험분석 서비스

"Committed To Quality"

FITI 시험연구원
FITI Testing & Research Institute

▫ 포장재 재질 • 구조 평가제도란?

"자원재활용법 제16조1항"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 •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•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

▫ 평가제도의 개요

대 상	자원재활용법 제16조1항에 따른 **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**
평가품목	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 등 4대 포장재
평가항목	몸체/라벨 등에 대해 단일재질 및 단일색상 여부, 라벨의 분리 용이성 등 재활용용이성을 평가
평가등급	4개 등급 ▪ "재활용 최우수", "재활용 우수", 재활용 보통", "재활용 어려움"
미이행시 조치사항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▪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▪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

▫ 평가대상 포장재

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

구 분	대상 제품	포장재 예시
종이팩	음식료품 농 • 수 •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용품용 샴푸 •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의복류 위생용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(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)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	
유리병		
금속캔 (알루미늄, 철)		
합성수지 재질		
	필름 •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	
	1회용 봉투 • 쇼핑백	

* 법 시행전 제조 • 수입된 제품(제조일자 기준)은 평가 비대상

▫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

자체평가 (의무생산자) → 평가 확인 (한국환경공단) → 평가결과 표시

1 자체평가

포장재 재질 • 구조 단위로 자체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신청
(단,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은 증빙서류 제출 예외)

*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모두 포장재 재질 • 구조 평가 대상
*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(www.iepr.or.kr)에서 신청 가능

2 평가 확인

* 자체평가 등급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평가확인서 발급
* 증빙서류 검토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통보 (10일 이내 보완)

3 재활용 용이성 등급(평가결과) 표시

*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(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)를 제외한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의 포장재 (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)
*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·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

등급표시 도안 예시

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	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
*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	* 제품 포장재의 정면,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

랩 : PVC 재활용 어려움

랩 : PVC 재활용 어려움

*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

*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"재활용 최우수", "재활용 우수", "재활용 보통", "재활용 어려움"으로 표기
* 주 재질 외 뚜껑,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, 일괄표시 아래 표기

[근거: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(안) 2019-646호]

4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

환경공단 / 의무생산자

1. 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

⇩

2. 제출서류 검토 → (서류검토 외 추가확인 필요시) 시험분석, 현장방문

⇩

3. 평가 확인서 통보 (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) → (이의가 있는 경우) ① 이의신청 (통보 후 30일 이내) ⇄ ② 결과통보 (이의신청 후 10일 이내)

* 평가를 받은 후 제품출시 가능
(다만,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)

⇩

이의가 없는 경우

4. 평가결과 표시 (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)

※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
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

5 계도 기간

*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·포장재 수 등을 감안, 등급평가에 대해 법 시행 후 9개월간('19.12.25~'20.9.24) 계도기간 운영
*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(~'20.9.24)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·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, 과태료 대상

6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

구 분	개선대상(사용금지) 제품·포장재 재질·구조	개선대상 적용 예외(사용가능 제품·포장재) *
PVC (PVCD 포함)	*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- 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(래미네이션), 수축포장 또는 도포(코팅)한 포장재 포함 (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)	*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(코팅)된 경우 *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,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 식품 *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, 의약외품,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*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, 판매가 가능한 햄류·소시지류(어육소시지 포함) * 축·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*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
먹는 샘물 및 음료류 *	* 유색 페트병 *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(점)착제	* 무색 페트병 * 열알칼리성 분리 접(점)착제 * *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

* 먹는 샘물 : 「먹는물 관리법」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
* 음료류 :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2019-31호(식품의약품안전처, '19.4.26) 식품공전 중 9. 음료류
* 열알칼리성 분리 접(점)착제: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(80℃)와 수산화나트륨(2%)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

포장재 재질 • 구조평가 관련 시험 • 검사 절차 (의무생산자의 자체 평가시 증빙서류용)

시험 • 검사 의뢰
시험신청서[1)]
구비서류[2)]
시험시료[3)]

→

접 수
① 접수증 발송
② 수수료 납부

→

시험 • 검사 진행
근무일 기준
10~20일

→

성적서 발행
이메일(전자문서),
우편, 방문수령

1) 연구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의 신청서 양식 참조
2) 포장재 재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포장재 구조 관련 자료 등(필요시)
3) 제품별 필요 시료량 참고

포장재 재질 • 구조평가 관련 시험 • 검사 절차 (의무생산자의 자체 평가시 증빙서류용)

분석항목			시험 소요일(일)	수수료(원) (VAT별도)	최소 필요 시료량(점)
단일재질	금속(철, 알루미늄, 혼합)		10	50,000	3
	합성수지	일반	10	50,000	3
		열분석 필요시		200,000	
	종 이	미표백 펄프(백색도)	10	25,000	3
		재질	10	50,000	3
복합 재질			15	재질 및 구조에 따라 상이[1)] (상담요망)	5
색상판정		육안분석	10	20,000	3 (평판시편[2)] 5cm×5cm×실두께)
		기기분석			
표면코팅 및 도색여부			10	50,000	3
비중 1미만 여부		갯수측정	10	50,000	3
		기기분석	10	50,000	3
접(점)착제 사용 여부			10	50,000	3
열알칼리성 분리 접(점착제) 여부			10	250,000	60g이상[2)]
접(점)착제 사용 여부			10	100,000	3
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			10	50,000	3
성형구조물 중량			10	25,000	3
알루미늄 두께			10	75,000	3
육안판정 증빙용 사진(포장재 재질 • 구조 사진) ◦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후 사진 증빙을 요구하는 재질 및 구조 증빙용 시험 • 검사 항목 전체 - 포장재 구조별 세부 사진 - 접(점)착제 사용 여부 - 표면코팅 및 도색여부 - 분리 가능 여부			10	10,000 (항목별)	3 (항목별)
기본료				10,000	

1) 복합재질의 재질 및 구조에 따라 비용 산정
2) 포장재별 디자인이 다양하므로 시료 부족시 추가 보완시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www.fiti.re.kr
www.facebook.com/fiti.home
www.instagram.com/fiti.home/

CONTACT US

- 본원
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
  T. 02 3299 8000
  F. 02 3299 8151

- 산업환경시험센터
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
  T. 043 711 8800
  F. 043 711 8804

- 강남지원
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
  섬유센터 3F
  T. 02 528 0983
  F. 02 528 0990

- 경기·강원지원
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
 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1차 302호
  T. 02 2113 8120
  F. 02 2113 8130

- 강북사무소
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49
  서울숲 코오롱 디지털타워 3차 801호
  T. 02.3299.8080
  F. 02.3299.8089

- 대구지원
  대구시 서구 와룡로 498
  T. 053 551 2150
  F. 053 551 2148

- 부산지원
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14
  T. 051 463 5462
  F. 051 462 8803

- 울산사무소
  울산시 중구 종가로 362-11
  울산그린카기술센터 501호
  T. 052 700 1580
  F. 052 700 1583

- 대전지원
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
  대덕비즈센터 C동 701호
  T. 042 623 5156
  F. 042 621 5143

- 전주지원
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
  전북테크노파크 2층 211호
  T. 063 716 9580~2
  F. 063 716 9583

- 광주사무소
 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-1
 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401호
  T. 062 710 7090
  F. 062 710 7094

- E-mail fiti@fitiglobal.com
- Web www.fiti.re.kr

■ 포장재 재질·구조평가 시험·검사 상담

상 담	강상욱 팀장	02-6931-8453	swkang@fitiglobal.com
	한경석 선임연구원	02-6713-8490	kshan@fitiglobal.com
접 수	윤혜연 책임연구원	02-3299-8009	hyeyy@fitiglobal.com
	이용선 선임연구원	02-6931-8460	sue.lee@fitiglobal.com